「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」

제정 2021. 7. 26. 개정 2023. 2. 20. 개정 2024. 12. 23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 법"이라 한다) 및 관련 법규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 에 따라,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 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준은 은행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. 다만, 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준을 적용한다.
 -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, 이 규준 및 이 규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다.
- 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금융상품"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서, 「은행법」에 따른 예금 및 대출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상품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상품,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예금 및 대출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, 시설대여, 연불판매, 할부금융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'금융상품'을 말한다.
 - 2. "금융소비자"라 함은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거나 청약을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8 호에서 정한 '금융소비자'를 말한다.
 - 3. "금융소비자보호기준"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서 정한 '금

- 융소비자보호기준'을 말한다.
- 4.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함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'내부통제기준'을 말한다.
- 5. 그 밖에 이 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

- **제4조(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)** ①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 를 가진다.
 - 1. 은행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 - 2.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 - 3.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·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 - 4.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
 - ② 은행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진다.

제3장 민원·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평가·제도개선

- **제5조(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 및 절차)** ① 은행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민원 또는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.
 - ③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 해소와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에 관한 은행 방침과 시행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 - 2.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
 - 3.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

- 4.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
- 5. 민원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
- ⑤ 은행은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.
- 1. 주요 소비자 권리
- 2. 민원 및 분쟁의 진행절차와 소요기간
- 3. 민원 및 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
- 4. 민원 및 분쟁 사례별 응대요령
- 5. 민원 및 분쟁 체크리스트
- 6. 업무자료집 접속방법
- 7. 주요업무 Q&A
- 8. 업무담당자 연락처
- **제6조(민원 및 분쟁에 관한 평가)**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,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, 민원처리 소요시간
 - 2.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
 - 3. 민원평가 결과.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
 - 4. 제도개선 실적,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
- **제7조(제도개선시스템 구축)**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 관련부서에 실 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고,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민원처리 관련 민원유형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거 관련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진행사항 및 결과를 은행장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,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, 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• 인력

- 제8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조직 및 인력의 구성) ① 은행은 이 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한다.
 - ② 은행은 민원·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, 순환배치,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이 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· 조치 및 평가

- 제9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) ① 은행은 임 직원등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
 -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,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조정·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, 이 기준의 미준수시 조치,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.

제6장 민원·분쟁 대응 관련 교육·훈련

- 제10조(금융소비자의 민원·분쟁에 대한 교육 및 훈련) ①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발생된 민원·분쟁의 적시 대응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 및 분쟁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
 - 2.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및 평가, 대내외 홍보
 - 3. 민원사례, 상담화법, 응대요령 등 유사 민원·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 원 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의 개발, 활용 방안
 - 4. 금융소비자의 민원 및 분쟁의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및 전자정보처리

시스템 활용에 대한 임직원 교육 과정 진행 및 정기·수시 보수교육 실시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과거 민원 이력,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직원중(모집인 등 판매조직을 포함한다) 불완전판매 유발 직원을 지정·관리할 수 있으며, 동 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7장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

- 제11조(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) ① 은행은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, 금 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, 소송 등 각종 권리구제절차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은행은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, 사실 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,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, 팩스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, 각 단계별 소요기간,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, 민원·분쟁 진행 상황 및 처 리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 및 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

- 제12조(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) ① 금융소비자는 분 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
 - 2.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
 - 3.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
 - 4.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

- 가.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· 제한 및 거절
- 나. 청약의 철회
- 다. 위법계약의 해지
- 5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
- 6.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) 은행은 금융소비 자보호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한다.
- 제14조(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)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) 은행은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단, 은행은 위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- 1.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금융상품 만기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, 안내내용(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사항등)과 관련된 사항
 - 3.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시점, 안내내용(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), 안내방법, 안내이력 관리와 관련된 사항
- 제16조(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) ①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금융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 - 1. 자료열람요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
 - 2. 청약철회의 기한·행사방법·효과에 관한 사항
 - 3. 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

- 4.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
- 5.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
- 6. 「예금자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등 법률상 기금에 따라 보호되는지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
- ②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, 제1항 각 호의 사항, 금융소비자보호 법령·약관상 권리 및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정보에 대해 전화, 서면 또 는 전자적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,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 시기·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.
- ③ 은행은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, 거부사유 유형, 관련 대응요령 및 주요 대응사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,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, 금융상품 만기 전·후 안내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와 계좌의 거래중지,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제17조 (정보의 시의성 확보) ①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9장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

- 제18조(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) ① 은행은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,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,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, 자료열람 요구,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.
 - ③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은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점검 및 분석 결과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야 하며, 해당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0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· 변경 절차 및 위임

- 제19조(이 규준등의 제정·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) ① 은행은 이 규준의 제 정·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.
 - ② 이 규준의 시행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외 기타사항

- 제20조(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) ①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·부과시다음 각 호의 비용 이내에서 산정·부과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, 해지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·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: 대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운용 손실
 - 2. 미회수 행정비용 : 인지세, 감정평가수수료, 임대차조사수수료, 담보권설정비, 기타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
 - 3. 미회수 모집비용 : 대출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(대출모집인, 대출모집플랫폼, 공인중개사에 지출한 수수료 등)
 - ②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·부과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의 급격한 변동 방지
 - 2.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
 -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출상품의 특성을 구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・부과하여야 하며, 산정된 요율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 - 1.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
 - 2.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(담보대출은 '부동산 및 동산', '보증서 및 기타'로 구분)
 - 3.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
 - ④ 은행은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 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- ⑤ 은행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·부과 기준을 여신부서 담당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⑥ 본조의 규정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제정·변경한다.

부칙(2023.2.20.)

이 규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은행별로 전산 개발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12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준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0조의 개정 내용은 이 규준 시행 이후 체결되는 대출계약 부터 적용한다.